서울도시연구 제17권 제3호 2016. 9, 논문 pp. 161～176 161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불법사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

윤형호*

Demand and Supply of The Illegal Lending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Hyungho Youn*

요약 : 이 연구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고 어떻게 그 시장이 형성되고 존재하는지를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본다. 상인 혹은 이용자들이 위법성과 고금리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속성과 편이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불법사금융 수요는 계속 존재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하면서도 위법적이거나 적법적인 채권확보로 상환안전성을 담보하고 재대출, 기간별 차등적인 이자적용 등으로 충분한 수익률을 얻기 때문에 자금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불법사금융업자가 검거되었을 때 치러야 하는 법적인 경제적인 댓가는 공급에 영향을 끼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내의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제적인 제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요인과 충분하지 않은 법적처벌이라는 경제외적인 요인까지 주어진다면 불법사금융 시장은 계속 형성될 것이고 충분히 작동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시키고 불법사금융 가운데 순기능을 하는 자금융통 수단을 제도금융으로 편입시키는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 불법사금융, 등록대부업, 대부업법, 법·경제

ABSTRACT : In this paper, we take a look at the economic behaviors of borrowers and illegal lenders and analyze how the illegal lending market exist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We investigate how borrowers use illegal loans despite high interest and coercive debt collection, and also how illegal lenders supply loans earning high yields and securing loan repayment despite loan exposure to less creditworthy borrowers. Compared with legal system of other countries, legal and financial punishment in Korea are weak. Given the market situation of illegal market and the legal enforcement, illegal lending can operate well. In conclusion, we suggest public policies that can curb illegal lendings and meet the demands of borrowers.

Key Words : illegal lending, registered money lending, law and economics

*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Senior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Civil Economy Research, The Seoul Institute), Tel: 02-2149-1231, E-mail: younh@si.re.kr

Ⅰ. 서론

과거에 일명 '사채'라고 불법사금융은 시장, 상가, 주택가 등 지역사회에서 상인과 주민들이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함에 따라 오랜 세월 유지되었다. 당시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은 개인 신용정보도 매우 적고 또한 신용분석 기법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지극히 미미하였다. 반면 사채는 상인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이었다. 특히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신용정보가 비교적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는 이를 토대로 나름의 신용기준에 따라 자금을 융통해줌으로써 틈새 금융시장을 형성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순기능도 있었지만 사채업자는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당시 민법이 정한 이자상한을 금리수준을 월등히 상회하는 고금리와 강압적인 채권회수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채는 199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한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이자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사채업자 가운데 일부는 사업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1999년부터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서 대부업 영업을 하였던 일본계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은행과 같이 공식적인 지점을 운영하면서 사채의 기존 어두운 이미지를 바꾸면서 대부회사들은 새로운 개인금융 기관으로 정착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자제한이 없던 상황이라 대부업체가 고금리 영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부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이자상한을 설정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금리를 추구하는 '사채'와 같은 불법사금융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정부는 등록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여전히 고금리, 강압적인 추심행위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불법사금융 단속과 처벌에 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관련피해가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등록대부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 NICE 신용정보회사 등이 대부업 현황 및 대부업 이용실태에 관한 공식통계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학술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찬우(2007)는 대부업 제도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을 연구하였다. 한준한·이민한(2013)은 한·일간 대부업 시장을 비교 연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윤형호(2013)는 서울소재 대부업체의 금리수준, 자금조달, 이익률 등 영업현황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분석하였다.

반면 불법사금융에 관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심지홍(2015)은 금융감독원 사금융 설문조사(2013)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부금융 설문조사(2014)를 토대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특히 이용자 수를 추정하였다. 일본에서는 Domoto(2013)가 일본 금융소비자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불법사금융(ヤミ金融) 이용자의 특성과 금리결정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용자 수를 추정하였다.

한편 불법사금융이 법률위반 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처벌조항 및 처벌현황을 형사정책 관점에서 기술한 논문은 몇 편 존재한다. 이상현·이승철

(2009)는 일본의 불법사금융 개별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검거하는 경찰수사에 관해 대표적인 일본 학자들의 논문을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이천현(2012)은 대부업법의 불법사금융 처벌조항과 정부의 단속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단속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등록대부업체 수가 전국 9,000여 개, 대부업 이용자 126만 명, 대부잔액 약 12조 원이다. 이 같은 등록 대부시장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사금융이 만연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매년 대부업이용자 설문조사(2014)에 따르면 얼마나 불법금융이 강고하게 유지되는지를 볼 수 있다. 2012년 이후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등록대부업과 무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비율은 72%와 28%로 안정적이다.

그 동안 언론에서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소개되고 정부 역시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정책과 관련 실적을 발표해 왔다. 한편 불법사금융은 시민경제 혹은 금융시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에 관한 연구는 관련공식통계 부족,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자료부족, 법집행기관의 관련 정보제공 거부 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1)]

이 연구에서는 비록 미진하지만 금융감독기관과 관련기관의 설문조사 및 보도자료, 법집행기관의 공식통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자료, 외국자료 등에 기초하여 불법사금융의 수요와 공급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행위를 통해 분석하고 어떻게 그 시장이 형성되고 존재하는지를 통상적인 경제학적인 관점을 넘어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불법사금융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위법성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수요가 존재하는 이유를 기존 공공기관 설문조사보고서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둘째, 불법사금융업자의 법적처벌과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로 인한 미상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공급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불법사금융업자 역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률이 확보되고 상환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자금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채인 일수(日收)라는 대출행위를 통해 어떻게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상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법 혹은 탈법한 행위를 하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불법사금융 시장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자들이 이윤을 확보할 수 방안이 있다면 형성될 수 있다. Becker(1968)에 의하면 경제적인 범죄행위는 범죄로 인한 이익과 체포의 확률과 처벌의 강도에 따른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불법사금융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수요공급 분석 이외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적 억제효과를 고려하는 법·경제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현행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가 미약하거나 법집행기관의 검거노력과 신체적, 경제적 처벌 수준이 낮다면 불법사금융 공급은 고금리 이익 때문에 충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규와 법집행이 불법사금융 공급을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검토하고 이들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법·경제학적인 분석을 한다.

1) 국무총리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고금리와 불법추심으로 단속한 건수는 각각 1,000건 정도된다. 이는 만연한 불법사금융 시장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검거건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사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해당시장이 형성되는지를 본 후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를 추정을 하여 얼마나 불법사금융이 만연하였는지를 파악한다. 다음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구조와 현상을 고려하여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한 법·경제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Ⅱ. 불법사금융 수요 측면

1. 불법사금융의 수요원인

1) 다수의 저신용자 존재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 금융소비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9월 NICE 개인신용등급을 보면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이 각각 168만 명, 138만 명, 149만 명, 38만 명이고 따라서 저신용자인 7등급 이하 합계는 495만 명으로 매우 많다.[2)]

2) 등록대부업체의 엄격한 신용조사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자금이 필요할 때 등록대부업체를 찾을 수 있다. 대부업체 내부자료에 의하면 2015년 3월 대부이용자의 평균 신용등급이 7.22로 알려져 있고 등록대부업체들은 9~10등급 금융소비자에게는 대출을 거절한다고 한다.[3)4)] 등록대부업체들은 일부 8등급에게도 대출을 하지만 이들은 담보대출자로 추정된다. 이들 9~10등급 신용등급 해당자는 약 260만 명 되는데, 이들이 자금이 필요하면 불법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다.

또한 NICE에 따르면 대부이용자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중대형 등록대부업체 90군데의 2014년 대출 승인율은 23.9%이다. 더욱이 2015년 1~10월 승인율은 21.2%로 하락하였다. 동 기간 대출승인을 얻지 못한 신청자는 517만 명으로 추산된다.[5)] 이유는 대부업체들은 연체율을 10% 초반으로 낮추어야 경영이 유지되므로 대출승인을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6)]

3) 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

불법사금융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자금조달의 신속성과 편의성, 금융지식의 부족, 불법사금융 위법성 용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대부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대부이용 기준은 이자율(44%), 대출신속성(27%), 등록여부(12%)이다. 신속성이 등록여부를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월등히 앞서고 있다. 특별히 2012년 이후 등록여부의 비율은 감소하고 신속성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급히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등록대부업자보다는 신속하게 쉽게 대부를 해주는 무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업자)를 이용할 수가 있다.

---

2)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신용등급체계 공시)
3) 매일경제, 2015.6.17
4) 신용등급 9, 10 등급 가운데 대부업 대출자는 14만 명에 불과하다.
5) 통상 대부중개업체들은 신청자 한명 당 10개 정도의 대부업체에 신청을 한다. 따라서 정확히 대출승인에서 탈락한 금융소비자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6) 이데일리, 2015.3.28, 2015.12.24

〈표 1〉 대부금융사 선택기준 현황표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율	2,098(54%)	2,222(45%)	1,437(42%)	1,401(44%)
대부금융업 등록여부	379(10%)	694(14%)	515(15%)	387(12%)
대출의 신속성	718(19%)	1,117(23%)	745(22%)	876(27%)
친절도	151(4%)	191(4%)	149(4%	131(4%)
대출기간	49(1%)	81(1%)	72(2%)	57(2%)
대출금액	357(9%)	439(9%)	391(12%)	295(9%)
기타	111(3%)	176(4%)	81(3%)	74%)
계	3,863(100%)	4,747(100%)	3,172(100%)	3,063(100%)

출처: 한국대부금융협회(2014)

송지원·이희숙(2014)의 연구는 상인들의 불법사금융 이용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육거리 전통시장의 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용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7] 조사결과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불법사금융 대출 이용자는 약 절반 정도인 48.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불법사금융이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뿌리를 깊게 내렸고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금융수단인 것을 의미한다. 설문에 의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고금리, 위험성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대출의 신속성과 편의성, 일수의 경우 특히 소액상환으로 인한 편의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둘째, 불법사금융업자는 보통 명함광고지에 '싼 일수' 라고 표기하고 금리 20%로 광고를 한다. 이 금리가 정률제 이자계산방법을 사용하면 실제로 180%정도 되지만 금리계산에 어두운 시장상인 같은 이용자들은 실질적인 고금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광고에 '신속대출'이라는 유혹적인 문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일수'를 사용하게 된다.

셋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조사(2013)에 의하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응답은 68.9% 수준으로 2/3 정도이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자금을 쓰고 있다. 한편 불법여부를 몰랐던 이용자도 추후 불법성을 인지하더라도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많은 금융소비자는 불법사금융이 불법임을 알고도 자금을 쓰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용인하고 있다.

2.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정

앞서 본 것처럼 등록대부업체들은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대부를 꺼리고 있다. 이들 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자이다. 한편 많은 상인들은 고금리의 위험성을 인지하지만 편리성과 신속성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불

7) 육거리 전통시장은 2013년 현재 1,200여개의 점포가 있는 대규모 상권으로 사금융이용 실태를 조사가 가능한 지역이다.

〈표 2〉 이용업체의 등록여부별 현황표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등록회사	2,165(57%)	3,315(72%)	2,248(71%)	2,215(72%)
미등록업체	337(9%)	310(6%)	196(6%)	213(7%)
등록·미등록업체	113(3%)	73(2%)	70(2%)	61(2%)
등록 여부 모름	1,154(31%)	913(20%)	665(21%)	566(19%)
계	3,769(100%)	4,611(100%)	3,169(100%)	3,055(100%)

출처 : 한국대부금융협회(2014)

법사금융 수요는 분명히 있다. 이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추정해보기로 한다.

심지홍(2015)과 Domoto(2012)는 각각 한국과 일본의 금융소비조사 자료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추정하였다. Domoto(2012)는 일본 불법사금융 조사를 가지고 추정한 결과 2011년 581,000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이 조사의 표본수가 93,000명이므로 추정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판단된다.[8] 심지홍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조사를 토대로 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추정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89명(2.4%)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다고 한다. 이 비율을 경제활동인구에 곱하여 93만 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다고 추정하였다. 하지만 표본 수가 3,700개에 불과해 추정의 신뢰성은 담보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대부금융협회의 대부이용 실태조사 내용에 근거해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규모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 조사는 비록 표본 수는 금감원 조사와 비슷하지만 비차입자와 제도권 금융이용자를 제외하고 등록과 무등록 대부이용자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본의 크기는 금감원 자료에 비해 매우 크다. 또한 매년 동일항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이 높다.

2012년 이후 등록대부금융사 이용자 비율은 72%, 미등록 대부업체 7%, 등록·미등록업체 2% '등록여부 모름' 20%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은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여부 모름'라고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무등록업체를 이용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이용자의 28%가 미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6월 대부이용자 수가 약 260만[9]인 것을 감안할 때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93만 명 (=260만 명×(28/72)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심지홍(2015) 추정 96만 명과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등록여부 모름'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모두 불법사금융업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과다 추정할 수 있다.

8) Survey on Use of *Yamikin*

9)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표 3〉 설문자료를 활용한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정

등록대부업 이용자	260만 명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정치	93만 명
전체 사금융이용자 대비 비율	72%	전체 사금융이용자 대비 비율	28%

〈표 4〉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정

구분	합계	외부자급 차입률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정치
9등급-10등급	188만 명	56%	105만 명

위와 같이 설문에서 얻은 표본자료에 근거해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추정하는 것과는 달리 전수자료를 가지고 추정해보고자 한다. 심지홍(2015)은 7등급 이하 금융소비자(544만 명) 가운데 대부업 이용자(249만 명)와 서민금융 이용자(155만 명)를 제외하고 잔여 금융소비자(140만 명)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약점이 있다. 첫째, 잔여 금융소비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다. 둘째, 서민금융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금용도, 대출한도, 신용조사를 고려하여 대출을 하기 때문에 잔여 금융소비자가 원한다고 반드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최근 4대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신용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9등급, 10등급은 대출이 불가하다고 한다.[10]

따라서 심지홍(2015)의 방법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 앞에서 보듯이 신용등급 9~10등급 금융소비자 188만 명은 등록대부업과 서민금융기관 마저도 이용이 어려워 차입이 필요하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가계금융자료[11]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분위는 주로 1~4등급이 이용한다.(이건범 2012)[12] 또한 동 자료에 따르면 소득 1~4분위 가구의 약 56%는 외부차입을 한다.[13] 따라서 앞서 언급한 188만 명의 56%인 약 105만 명은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사금융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14] 이와 같이 두 가지 추정법에 의해 얻어진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93만 명과 105만 명으로 큰 차이는 없다. 이 두 결과를 감안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10) 머니위크, 2015.11.9
11)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
12) 이건범에 의하면 분위별 대부업체 이용비중 1분위(4%), 2분위(5%), 3분위(2%), 4분위(4%), 5분위(1%)
13) 여기서 5분위는 불법사금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4) 물론 8등급의 일부도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업자를 찾을 수 있다. 이렇다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108만 명보다 클 수 있다.

Ⅲ. 불법사금융 공급측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불법사금융업자가 금리를 극대화하고 상환을 확실히 받아 이윤을 확보함으로써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보통 일수, 월변, 급전이라는 사채를 운영한다. 이 가운데 가장 성행하는 것은 일수이다.

월변은 월 일정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다. 통상 월변 이자 10%(연 120%)를 받더라도 실질이자율은 일수에 비해 매우 낮다. 급전은 실질이자율이 매우 높더라도 운영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금리수입이 많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자금수요가 많고 실질이자율이 높은 일수를 많이 운용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는 일수의 경우 매일 균등상환금을 점검함으로써 미상환위험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수를 위주로 불법사금융 공급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이윤의 확보

1) 일수의 고금리

일수대출의 경우 채무자는 매일 균등상환을 한다. 이 정률법에 의해 어떻게 이자율이 결정되는지를 보기로 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통상 원금 10,000,000원에 대해 1.2배인 12,000,000원을 120,000원×100일 형태로 원리금을 받고 대출한다. 채무자는 선일수 120,000원과 5% 수수료 500,000원을 제외한 9,380,000원을 Day 0에 지급받고 Day 1부터 Day 99까지 매일 12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한다. 이 같은 균등상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실질이자율을 계산한다. 이때 실질이자율(r)은 181.1%가 되고 이는 대부업 최고 이자인 34.9%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9,380,000 = \sum_{n=1}^{99} \frac{120,000}{(1+r/365)^n}$$

2) 재대출(일명 '꺽기')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앞서 채무자가 최초 1,000만 원을 빌리고 12만 원씩 100일간 상환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인 자영업자인 경우 대부분 100일간 연체 없이 12만원씩 상환하기가 쉽지는 않거나 혹은 상환기간 동안 생활 또는 사업상 우선 써야 할 자금이 생긴다. 이때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된다고 판단하면 기존대출 시점으로부터 통상 60일에서 80일 이후 10,000,000원을 추가 대출을 해준다. 60일 이후 재대출이 일어났고 4,800,000원을 일시에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실질이자율을 계산해 본다.[15] 실질이자율은 221.0%가 되고 이는 앞서 본 실질이자율 188.7%보다 상당히 높다.

$$9,380,000 = \sum_{n=1}^{59} \frac{120,000}{(1+r/365)^n} + \frac{4,800,000}{(1+r/365)^{60}}$$

3) 소액대출의 경우 짧은 상환기간과 원리금배수의 증가로 금리증가

소액대출의 경우 균등상환부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균등상환 총액을 1.2배에서 1.3배로 올리고 짧은 기간 상환하도록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5)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재대출로 인해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일수를 하루 혹은 이틀치를 감면해주면서 채무자에게 이익을 주는 척 한다.

3,000,000원에게 대출하고 1.3배인 7,200,000원을 60,000원×65일 형태로 균등상환을 하도록 한다. 이때 선일수 60,000원과 5% 수수료 300,000원을 제외한 2,64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이자율은 381.3%가 되어 급등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영업사원을 두고 소액 균등상환액이라도 매일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자율을 높이 받는다.

$$2{,}640{,}000 = \sum_{n=1}^{64} \frac{60{,}000}{(1+r/365)^n}$$

4) 장기간 거래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가 상환을 하는 한 고금리 불법대출을 오랫동안 하여 이익을 극대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하고 있는 민생연대가 이자율 위반으로 최근에 상담한 100명의 자료에 의하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평균 거래기간은 약 2년 10개월(34.22개월)이었고, 5년이상 장기간 거래한 사람도 16%(16명)나 되었다.[16]

2. 원리금 회수방안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 연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은 등록대부업체 이용자의 경우 75.9%이지만 미등록대부업체 이용자는 208.1%로 금융부채가 소득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소득에 의한 상환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부협회 신용조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불법사금융업자는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① 위법한 추심행위인 상환압박, ② 미상환금 조정 ③ 공증증서에 의한 법적인 강제집행 및 사기죄 고소, ④ '빚돌려막기'를 통해 상환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우선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상환압박을 하여 잔여 미상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경제형편이 무척 어렵거나 다중대출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법사금융업자는 다른 대안을 찾게 된다. 둘째 방안으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미상환금의 일부를 탕감하여 채무를 가볍게 한 후 잔여분을 일시 상환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공증증서에 의해 동산 및 급여 압류, 혹은 전세보증금 양도와 같은 법적인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출할 때 임의 혹은 공란의 채권금액과 법정상한 내의 금리를 적은 채권서류와 공증증서 위임장을 확보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후일 채무자가 연체에 들어가면 공증증서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심지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17]

또한 채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과 같은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만약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되면 가게주인 혹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을 받아가겠다고 협박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은 이 같은 강제집행으로 미상환 원리금을 다 받지는 못 하지만 이를 통해

16) 무료법률지원실("최재천의 민생고 희망 찾기 무료법률지원실")을 운영해온 민생연대 자료를 인용한다.
17) 공증증서는 채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다.

〈표 5〉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부업법 위반 처벌조항

항목	한국	싱가포르	일본
무등록/무면허	5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	- 법인: 5만~50만 달러 벌금과 4년 이하 징역 - 개인: 3만~30만 달러 벌금과 4년 이하 징역 - 재범 시 3만~30만 달러 벌금과 7년 이하 징역	3천만 엔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
이자율 위반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2만 달러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둘 다	3천만 엔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둘 다, 계약무효

출처: 한국 대부업법, 일본 대금업법, 싱가포르 Money Lending 법

채무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채무자가 상환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가 자력으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를 소개해주고 거기서 얻은 자금으로 상환을 받기도 한다.

Ⅳ.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집행

1. 불법사금융 처벌조항

불법사금융업자는 무등록영업을 하고 금리상한을 위반한다. 이 두 가지 위반에 대해 주요 국가는 법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이 대부업법을 제정하면서 많이 참고한 일본 대금업법과,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대부업법 조항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금리위반을 하므로 가장 위중한 위반인 무등록영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보기로 한다. 한국의 처벌은 5천만 원 혹은 5년 이하 징역, 싱가포르의 처벌은 5만 싱가포르달러(약 5억 원) 혹은 4년 이하 징역, 일본의 처벌은 3천만 엔 혹은 10년 이하 징역이다. 일본의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은 한국에 비해 매우 엄중하다. 싱가포르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규모와 고금리에 따른 부당이익에 비례하여 벌금을 5억 원까지 부과하고 있어 금전적인 처벌이 매우 크다.

2. 경찰의 불법대부업 검거 및 송치 현황

앞서 본 것처럼 대부금융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과거 4년간 일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검찰과 경찰이 불법사금융을 특별단속을 할 때 검거건수가 5,987건이 된 후 검거건수는 2013년, 2014년 계속 하락하였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4년 1,259건을 검거하고 검거인원은 2,313명이었다. 이 가운데 혐의입증 불충분으로 1,519명만을 기소하였고 기소율은 65.6%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1,498명으로 대부분이다. 이처럼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기소율이 낮고,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약식재판을 받기 때문에 신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 대부업법 처벌위력이 떨어지게 된다.

〈표 6〉 불법대부업 검거 및 송치 현황

단위: 건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기소			불기소
				소계	구속	불구속	
2004	817	803	1,247	1,113	110	1,003	-
2005	524	481	732	544	23	521	200
2006	538	543	821	648	14	634	177
2007	3,065	3,006	4,769	4,369	72	4,297	398
2008	4,872	4,770	7,188	6,689	61	6,628	522
2009	15,126	14,933	17,119	15,858	105	15,753	1,367
2010	2,540	2,381	3,955	3,078	31	3,047	771
2011	4,506	3,919	6,526	4,798	27	4,771	1,579
2012	6,546	5,987	9,656	7,882	44	7,838	1
2013	2,301	2,087	3,693	2,622	23	2,599	864
2014	1,395	1,259	2,313	1,519	21	1,498	674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04~2014)
주: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불기소는 기소중지,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음

2012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의해 검찰과 경찰이 9,656명을 검거하고 7,882건을 기소했지만 뒤에 보듯이 실제 법원에서 처리한 건수는 1,864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법사금융업자를 수사하더라도, 대부업법을 위반한 금융거래에 관한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검찰이 기소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부업 수사가 어려운 것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영업사원을 앞에 내세우고, 부실 및 이중 허위 채권서류를 작성하고 자금거래는 대포통장과 현금수령 등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금융피해자가 법위반을 들어 고소를 하더라도 실질채권자가 누구인지, 최초 채무원금이 얼마인지, 통장거래 혹은 영수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변제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기 어렵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이자율 위반과 같은 범죄를 입증하여 기소송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범죄입증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수색과 체포영장을 받기도 어려워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다.

반면 인구가 4백만 명에 불과한 싱가포르에는 약 180개의 등록대부업자가 있고 싱가포르 경찰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의 무등록대부에 대한 검거는 2010년에서 2011년 1,508명에서 1,981명으로 34% 증가하였다.[18] 이 같은 싱가포르 불법대부업 검거건수와 인구가 10배가 되는 국내의 2014년 검거건

18) 싱가포르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v.sg/ahlong/uml_situation.html

〈표 7〉 대부업법 위반 동종 재범 건수 및 기간

단위: 건

구분	계	당해년 검거	재범률 (%)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2009	108	14,933	0.7	8	11	8	63	8	7	3
2010	460	2,381	19.3	15	31	40	220	74	50	30
2011	1,119	3,919	28.5	36	120	71	391	181	203	117
2012	2,252	5,987	37.6	98	145	120	808	359	413	309
2013	826	2,087	39.6	28	46	33	309	119	149	142
2014	421	1,259	33.4	14	13	20	156	95	55	68

출처: 범죄분석 통계(2009~2013)

수 2,313명을 비교해 보면 우리경찰이 불법사금융 검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경찰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략은 지속적인 단속, 법적처벌 강화, 대규모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불법자금 차단, 단순참가자까지 검거 등이다.

2009~2014년 대부업법 위반 재범률 관한 범죄통계를 보면 2011년 이후 재범률이 30%를 넘어 매우 높다. 대부분의 재범은 지난 범죄 이후 1년 후에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범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은 징역형보다 집행유예로 관대한 편이고 이 때문에 재범률도 높다.

3. 대부업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

대부업 위반에 대한 법원 1심의 판결의 판결을 보면 비록 유죄율은 높더라도 징역형은 매우 적고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다. 2014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판결을 보면 처리건수는 946건이다. 처결 내용을 보면, 무죄 및 기타 198건, 징역형 47건, 집행유예가 273건, 벌금형이 426건이다. 따라서 무죄 및 기타와 벌금형, 그리고 집행유예가 각각 65%와 28.9%로 대부분이고 징역형은 4.9%에 불과하다.

대부업법 제19조(벌칙)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부업법이 정한 상한이자율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 위반자는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 폭행 등 타 형사범죄가 병합되지 않는 한 혹은 전과가 없다면,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처럼 집행유예 혹은 벌금이 선고된다. 이처럼 대부분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대부업법 처벌의 법적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법집행의 강도와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경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하는지 혹은 고소가 들어오면 비록 법위반 성격상 수사가 어렵더라도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불법사금융업 이용자를 10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2012년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중소형 혹은 개인 대부업자들의 평균 거래인원은 30명 안팎이다(윤형호, 2013). 이를 토대로 약 30,000개의 불법사금융업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약 한

〈표 8〉 대부업법 위반 형사공판사건 인원수표(제1심)

단위: 건

구분	처리 건수	징역형	집행 유예	벌금형	선고 유예	유죄	유죄율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공소 기각	기타
2008	707	17	152	398	8	575	81.3%	4	-	1	-	127
2009	2,671	42	389	1,744	31	2,206	82.6%	12	-	1	-	452
2010	1,774	37	192	964	21	12,14	68.4%	33	1	3	2	521
2011	940	19	185	541	4	749	79.7%	28	1	1	-	161
2012	1,864	46	505	983	2	1,536	82.4%	16	-	7	-	305
2013	1,267	45	357	725	2	1,129	89.1%	37	2	2	-	97
2014	946	47	273	426	2	748	79.1%	14	1	1	-	182

출처: 사법연감 통계(2008~2014)

불법사금융에서 2명 이상 일한다면, 60,000명 이상이 불법사금융 업계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금융감독원이 2014.2.6.부터 2015.5.31.까지 불법사금융에 사용된다고 의심되어 정지시킨 전화번호가 14,926건에 달한다.[19]

이렇게 불법사금융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들 가운데 2013~2014년 연간 2,000명 정도, 전체 잠재적인 범법자의 3%만을 기소를 하고 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수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업무가 경찰업무의 후순위에 속하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과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에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수와 판결의 강도를 보면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방침과 의지를 알 수 있다.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최근 매년 1,000~2,000건의 사건에서 500~1,000명 정도가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한다. 유죄판결 인원의 수는 앞서 추정한 불법사금융업자 60,000명에 비하면 매우 적다. 또한 무죄 및 기타와 벌금형이 65%와 집행유예 28.9%이고 징역형은 4.9%에 불과하여 법적 처벌에 의한 불법사금융 억제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큰 두려움을 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불법사금융 시장의 규모에 비해 법적인 처벌과 강도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매우 단호한 조치인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싱가포르 법원은 한화 2.5백만 원을 연금리 50%에 주위 지인 몇 명에게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도 3개월 징역형과 108백만 원의 벌금을 병과(倂課)하는 중형에 처하고 있다.[20] 특별히 조직적으로 부동산구입과 관련하여 불법사금융을 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벌금금액은 불법사금융을 하면서 얻은 부당이익을 초과하여 부과하고 있다.[21]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자위반에 관한 출자

19) 금감원 보도자료 2015.6.9

20) http://www.gmanetwork.com/news/story/228290/news/pinoyabroad/pinay-maid-fined-jailed-over-illegal-money-lending

〈표 9〉 출자법 위반 1심 최종판결

단위: 건

년도	최종판결						상소
	유죄				공소기각	기타	
	인원	총수	유기징역	벌금			
2008	318	317	313	4	1	-	27
2009	243	241	237	4	-	2	20
2010	246	245	243	2	-	1	32
2011	163	161	158	3	-	2	14
2012	145	145	142	3	-	-	12
2013	74	72	69	3	-	2	10
2014	65	64	59	5	-	1	5

출처 : 일본사법통계(2008~2014)

법 관련처벌을 보면 피고에게 벌금형은 거의 없고 대부분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무등록 영업과 고금리 위반에 대해 법원의 징역형 처결을 보면 거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고 있어 2014년 실형율은 11.6%에 불과하다. 일본학자들 역시 이 같은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불법사금융 척결에 지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상원·이승철, 2009)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불법사금융업 공급측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법자에 대한 신체상의 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검거 시 직면하는 경제적인 대가가 무척 크다면 불법사금융업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대부업법에 의하면 경제적 재재수준은 무등록영업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 원, 이자율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 이내이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벌금상한은 약 5억이며 벌금액은 고금리로 얻은 부당이익에 비례한다. 또한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의 자산을 동결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폐쇄시키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도 불법사금융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법죄수익은닉처벌법이 있지만 이법이 적용되었다는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국내의 대부업의 처벌조항은 약하고, 경찰의 수사는 불법사금융 영업형태 때문에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의지도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관대하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사법체계가 불법사금융을 억제하는 데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예상되는 고금리에 따른 초과이윤 때문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해마다 진행하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과 저신용자에 대한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사금융 시장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불법사금융의 수요와 공급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행위를 통해 분석하고 어떻게 그 시장이 형성되고

21) Singapore Strait Times Jul 3, 2015, 5:21 pm

〈표 10〉 출자법 혹은 대금업법 위반 제1심에서의 징역형 과형 현황

단위: 건

년도	총수	5년초과	5년이하	3년		2년 이상		1년 이상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실형율 %
				실형	집행유예	실형	집행유예	실형	집행유예	실형	집행유예	실형	집행유예	
2008	439	-	2	2	26	11	124	35	219	7	13	-	-	13.0
2009	359	-	3	7	26	13	90	37	163	8	11	1	-	19.2
2010	340	1	5	2	23	11	89	28	161	4	14	-	2	15.0
2011	251	-	4	3	18	12	46	20	120	8	20	-	-	18.7
2012	208	-	2	3	19	6	58	14	94	6	6	-	-	14.9
2013	126	-	1	1	9	7	29	9	66	3	1	-	-	16.7
2014	102	-	-	-	5	2	25	9	53	1	7	-	-	11.8

출처: 일본 법무성 범죄백서(2015)

존재하는지를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위법성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사금융 수요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공급측면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로 인한 미상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충분한 수익률을 얻고 상환안전성을 담보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현행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가 미약하고 법집행기관의 검거노력과 신체적, 경제적 처벌수준이 낮기때문에 불법사금융 공급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요인과 법적처벌이라는 경제외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불법사금융은 시장이 형성되고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시장의 기능을 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송지원·이희숙(2014)의 연구에 따르거나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수를 지켜본 시장전문가에 따르면 시장상인들은 일수라는 사채의 편의성을 좋게 보고 있으며 대체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라는 순기능이 고금리라는 문제를 덮고 있다. 둘째, 불법사금융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입자가 쓰게 되면 가계경제 혹은 개인사업의 파탄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라는 심각한 역기능이 일어난다.

이러한 불법사금융의 복합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관점에서 불법사금융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 불법사금융업자가 직면하는 미약한 법적인 처벌과 경제적인 제재의 부재 때문에 불법사금융 공급은 여유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보는 것처럼 법적인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강력한 경제적인 제재를 도입해 불법사금융의 공급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현재 수요측면에서 불법사금융 대책은 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고금리 혹은 불법추심 방지를 위한 금융상담, 파산 및 신용회복, 저(중)금리 공공대출 알선 등이 있다. 공공대출은 대출규모도 적고 대출조건이 엄격해 상인들이 쉽게, 적기에 대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공공대출과 더불어 상인들이 선호하는 일수(日收)를 등록대부업의 업무로 끌어들여 불법수요를 합법수요로 전환하는 것은 유용한 수요대책이 될 수 있다. 현재 법정상한 금리 아래에

서는 일수(日收)가 가지는 거래비용 때문에 등록대부업이 일수(日收)영업을 할 수는 없다. 만약 정책당국이 등록대부업에서 거래비용이 낮은 주수(週收)를 영업하도록 장려하고 예외적으로 정액제를 허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준다면 불법이 대부분인 일수(日收)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등록대부업이 하는 일수(日收)영업에 정액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송지원·이희숙, 2014, "전통시장 자영업자 재무관리와 사금융 이용",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21~40.

심지홍, 2015, "대부업양성화 이후의 불법사금융 시장",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 자료집」.

윤형호, 2013,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이건범, 2012, "금융포용과 서민금융 정책방향", 「경제와 사회」, 96: 141~177.

이상현·이승철, 2009, "불법대부업에 대응하는 일본경찰의 수사활동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0(2), 33~57.

이천현, 2012, "경제위기와 형사법 대응: 불법사금융업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12(4): 1505~1533.

정찬우, 2007,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정책조사보고서」, 금융연구원.

한준한·이민한, 2013, "한일 대부업시장의 형성과정과 향후 정책적 과제", 「경영사학」, 28(1): 25~53.

금융감독원, 2013,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 보도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2014, "대부금융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Becker, Gary, 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2): 169~217.

Domoto, Hiroshi, 2012, "The risk of Yamikin (illegal lenders) market, which is spreading quietly in Japan", *Working Paper*, Institute for Research on Credit Business, Waseda University.

원 고 접 수 일 : 2016년 4월 29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16년 8월 18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16년 9월 1일